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435
----------	------------

제안일자 : 2026. 3. 4.
제안자 : 주택공간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조례 제5184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대지안의 조경에 관한 적용례)를 개정안과 같이 삭제할 경우, 일률적으로 조경설치가 제외됨에 따라 개별 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부칙 제2조를 삭제하지 않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수정함.

2. 수정의 주요내용

- 가. 안 조례 제5184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적용례로 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수정함.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조례 제5184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대지안의 조경에 관한 적용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조경 등의 조치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제4항제8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조경 등의 조치 범위는 건축위원회 심의(변경심의를 포함한다)를 거쳐 정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서울특별시조례 제5184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 부칙</p> <p>제1조(시행일) (생략)</p> <p>제2조(대지안의 조경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4항 제8호의 규정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지원받는 시설현대화 사업의 사업기간 중에 한한다.</p>	<p>서울특별시조례 제5184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 부칙</p> <p>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서울특별시조례 제5184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 부칙</p> <p>제1조(시행일) (개정안과 같음)</p> <p>제2조(조경 등의 조치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제4항 제8호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조경 등의 조치 범위는 건축위원회 심의(변경심의를 포함한다)를 거쳐 정한다.</p>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제5184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대지안의 조경에 관한 적용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조경 등의 조치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제4항제8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조경 등의 조치 범위는 건축위원회 심의(변경심의를 포함한다)를 거쳐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서울특별시조례 제5184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p> <p>제1조(시행일) (생략)</p> <p>제2조(대지안의 조경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4항제8호의 규정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지원받는 시설현대화 사업의 사업기간 중에 <u>한한다.</u></p>	<p>서울특별시조례 제5184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p> <p>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p> <p>제2조(조경 등의 조치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제4항제8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조경 등의 조치 범위는 건축위원회 심의 (변경심의를 포함한다)를 거쳐 <u>정한다.</u></p>